

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1월 1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인 기

나. 제안이유

-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·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되었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,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따라서, 예산 절감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하여 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수집·운반 대행 업무로 현행대로 유지 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·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조항을 삭제함.

(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936호 부칙 제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□ 본 『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,

-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·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, 사업비용 절감 및 민원의 현격한 감소 등, 효율적인 운영결과가 도출됨에 따라, 현행대로 대행 업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,
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업무 ‘단서’ 및 부칙의 ‘경과조치’ 조항을 삭제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단서 : 다만,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.▪ 제2조(경과조치) : 폐기물 수집·운반 업무 직영 전환 시점(2015. 1. 1) |
|--|

- 본 조례안은, 현재 인동, 진미, 양포동에 2014. 12. 31까지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민간대행사업의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, 그동안의 대행사업 시범 결과가 예산절감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남에 따라, 민간 대행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 안으로서,
- 지금까지 민간대행업무로 운영한 결과로는 운영상의 부작용 사례는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, 민간 대행업무로 전환에 따른 고용, 임금 문제 등은 장기과제 검토대상으로 여겨지며,
- 민간대행 업무로 전환시, 대 시민 서비스의 질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